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9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1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최수진 · 서명옥
이상희 · 추경호 · 김위상
김석기 · 우재준 · 이현승
김승수 · 권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톤 미만의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, 지역자원 시설세를 면제하고,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,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 어민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,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.

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와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귀어를 촉진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함.

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5

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9조 제2항 및 제3항).

법 률 제 호

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

지 방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를 다 음 과 같 이 개 정 한 다.

제9조제2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 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	제9조(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「지방세법」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면제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</u> <u>12월 31일</u> -----.
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·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, 어업권·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<u>2025년 12월 31일까지</u> 각각 면제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 ----- -----.